의 안 번 호

1573

【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】

# 심 사 보 고 서

#### 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19. 9. 6.(금)

나.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9. 9. 6.(금)

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9. 9. 18.(수)

#### 2. 제안설명 요지 (안전도시국장 장길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- O 자원봉사자에 대한 국민신문고('19. 1. 30. 접수) 민원사항을 반영하고, 타 구군과의 감면 형평성을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조항 추가
- 2019년 울산시 전환기 특정감사 지적사항( '19.2.11 ~ 2.28.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근거 부재. 근거 마련 요망)을 반영하여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요금징수의 근거를 마련
- O 상위 법령(주차장법 제19조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) 위임 조례 사항을 반영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범위 완화를 통해 주차 공간 확보 및 주민 편의 도모
- O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의거 외국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

#### 나. 주요내용

- O 주차요금 경감 대상자에 자원봉사자 추가(안 제6조)
- O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근거 마련(안 제6조의2)
- O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내용 반영(안 제12조)

#### 다. 근거법규

- 「자원봉사활동기본법」제4조
- ○「지방자치법」제139조
- 「주차장법」제19조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

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유경달)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「주차장법」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, 정비, 관리, 주차요금 등을 규정하여 구민에게 주차장 이용의 편 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
-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,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 근 거 법 규

####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

**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
### 「지방자치법」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#### 「주차장법」

제19조(부설주차장의 설치)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## 「주차장법 시행령」

- 제7조(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) ②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·시·군 또는 자치구(이하 "시·군 또는 구"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한다.
  - 1.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